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추가〉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9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추가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2. 25.
3.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정부가 해양개발 등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생략)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u>
<u>6. ~ 9.</u> (생략)	<u>7. ~ 10.</u>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수십 년간 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4도 상승하였고¹⁾, 이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대형 산불, 가뭄 등의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적응을 더 이상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정책, 예산, 제도 등에 기후위기 적응 개념을 통합해가야 한다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가 요청되고 있음.²⁾

- 현행법 제6조제2항은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해양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제2호),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제3호),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제5호) 등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³⁾

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3도(± 0.13 도) 상승했다고 발표하였음. (WMO,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5」, 2026.3.23.)

2)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2025.9.23., p.150.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은 연근해 어종의 변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생물의 폐사 및 해조류 산지 파괴, 어업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의 고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⁴⁾

해양수산 분야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적 과제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및 어촌 영향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이상기후·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

-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 4) 최근 57년간(1968~2024년)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은 0.74도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주변 표층 수온은 1.58도 상승하여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1980년대 151만 톤에서 2020년대에는 91만 톤 수준으로, 24년에는 84.1만 톤까지 감소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영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또한, 2024년에는 9월 하순까지 이어진 고수온(해양열파) 현상으로 1,430억 원 규모의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하여,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대 피해액을 기록함.(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2025」, 2025.4.24.)

사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내용에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추가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⁵⁾

< 기후변화대응 또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입법례 >

구분	조문	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5년마다 조사·평가, 공표하도록 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이상기후·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공표하도록 규정
「산림기본법」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 평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공표하도록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조사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5)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구분	조문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물관리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방안 포함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포함하도록 규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정부로 하여금 국가기본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025.7.29. p.69. 참고하여 재작성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1-' 30)

비전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목표

1.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2.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3.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6대 추진전략

1.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2.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① 안심하고 일하며 누리는 해양	① 함께 잘 사는 어촌
②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	②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③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	③ 지역과 어우러지는 연안·항만 조성
3.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4.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①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화	① 해양수산 新산업시장 창출
②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② 기존산업의 혁신 성장 촉진
③ 해양수산업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③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 조성
5.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6.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 실현	① 'K-해양수산'으로 국제사회 상생 견인
② 해양공간 활용·관리의 최적화	② 굳건한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수호
③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보존	③ 해양협력으로 동북아 번영에 기여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상기후·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림기본법」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보급이 촉진·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관리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 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